

안전보건관리규정

(원규분류기호 : 2604)

제 정 2024. 7. 25. 규 제 32 호

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5
제 2 조	용어의 정의	5
제 3 조	적용범위	6
제 4 조	기본원칙	6
제 5 조	안전보건방침	6
제 6 조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6
제 7 조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7
제 8 조	전문성 강화 등	7
제 9 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7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 10 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8
제 11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
제 12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8
제 13 조	안전관리책임자	8
제 14 조	안전보건주관부서장	9
제 15 조	관리감독자	9
제 16 조	안전관리자	10
제 17 조	보건관리자	10
제 18 조	산업보건의	11
제 19 조	안전보건담당자	11
제 20 조	작업지휘자	12
제 21 조	이행평가 등	12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 22 조	책임	12
제 23 조	안전보건교육	13

제 24 조 물질안전보건교육 13
 제 25 조 방문객 안전보건정보 제공 13
 제 26 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13
 제 27 조 기록·보존 13

제4장 안전관리

제 28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14
 제 29 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14
 제 30 조 전기설비 안전 14
 제 31 조 전기용품 사용 16
 제 32 조 전열기구 16
 제 33 조 안전검사 16
 제 34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16
 제 35 조 작업중지 17
 제 36 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17
 제 37 조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17
 제 38 조 안전보건일터 조성의 날 17
 제 39 조 안전보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18
 제 40 조 표준작업 안전수칙 18
 제 41 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8
 제 42 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19
 제 43 조 교통재해 예방 19
 제 44 조 비상조치계획 19
 제 45 조 피난 및 대응훈련 등 20
 제 46 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20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 47 조 작업환경측정 20
 제 48 조 건강진단 21
 제 49 조 건강관리실 등 설치 22
 제 50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22
 제 51 조 보호구 22
 제 52 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22
 제 53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23
 제 54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26
 제 55 조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24

제 56 조	건강유지 및 증진	24
제 57 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25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 58 조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25
제 59 조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26
제 60 조	연구실 사용제한	26
제 61 조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27
제7장 위험성평가		
제 62 조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7
제 63 조	위험성평가 실시	27
제 64 조	위험성평가 주기	27
제 65 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28
제8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 66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28
제 67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28
제9장 보칙		
제 68 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29
제 69 조	포상 등	29
제 70 조	징계	30
제 71 조	문서보존연한	30
제 72 조	준수	30
	부칙	3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외주업체)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외주업체) 전부를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1.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수직 등을 말한다.

- 12.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3.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14. “화기작업”이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불티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이 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의 임직원 및 연구원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과 원내(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시설물, 연구 기계·기구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연구원은 임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 및 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⑤ 연구원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방침) ① 원장은 연구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연구원 인트라넷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소방, 전기, 교통,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① 원장은 매년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반영방법, 사용 용도, 계상 등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시 부서별 안전보건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등) ① 원장은 안전보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안전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승진심사, 교육연수 등 인사관리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규위반, 품위손상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

다.

④ 중대재해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0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서 정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원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11.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13.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원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확인 등을 지시·감독하며, 부원장으로 한다.

② 부원장이 병가, 장기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서 최상위 부서장이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자가 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에 의한 개선조치 지시·감독
2.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결과에 의한 개선조치 지시·감독
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시·감독
4.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방호장치의 설치 및 관리 상태 감독
5.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감독
6.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 검토 및 이행 상태 감독

제14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①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업무분장요령에 규정한 안전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하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안전관리자 업무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관리자 업무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보건일터 조성의 날 운영 총괄
5.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제15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직제규정에 따라 임명된 부서장과 「연구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책임자 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원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보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④ 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임직원의 건강 보호 조치

2. 임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연구원 내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 및 지역전문대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부서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소관부서 내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소관부서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 소관부서 내 안전보건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5. 소관부서 내 안전보건 자료의 비치 및 관리
6.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연구실에 한함)
7.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협조사항 이행
8.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작업지휘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작업과 관련된 부서장 또는 감독원이 작업지휘자가 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원장은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착수 또는 착공 전에 감독원을 통해서 수급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21조(이행평가 등) ① 원장은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간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이행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하며, 그 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를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책임) ① 모든 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원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에게 불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 시는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계획을 당해 연도초까지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③ 연구원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원장은 임기 중 1회 이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물질안전보건교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25조(방문객 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원장은 방문객에게 비상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 등을 알린 후 출입시켜야 한다.

② 각 소관부서는 부서와 관련된 방문객에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수칙을 교육 후 출입시켜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 유해·위험업무가 없는 회의, 납품 등에 따른 방문 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강사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보전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기준, 교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27조(기록·보존)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주무부처장관과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계획
3. 안전보건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부처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④ 원장은 주무부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원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이 반영된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29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연구원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원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30조(전기설비 안전) ① 원장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변전실 및 개폐기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원장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원장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개폐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개폐기의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 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⑥ 원장은 정전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직원등” 이라 한다)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⑦ 전기설비 설치, 수선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31조(전기용품 사용) 직원은 적정 전기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전기용품은 소정의 검사를 필한 합격품을 사용하고,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2조(전열기구) ① 모든 전열기구는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승인된 전열기만 사용하게 하고 이석 및 퇴실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연구원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관계부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및 안전검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연구원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위험물질관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35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등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때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등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중지 기록 및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연구원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등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 종류,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37조(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① 연구원은 직원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연구원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직원등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직원등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제38조(안전보건일터 조성의 날) 원장은 안전보건 의식 고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안전보건일터 조성의 날을 시행한다.

제39조(안전보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원장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작업 6개월 미만 근속 시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3. 직원등이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4.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5. 직원이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6. 직원이 위험작업을 일과시간 이후에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
7.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 수요부서 등이 긴급으로 요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수요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행

제40조(표준작업 안전수칙) ① 소관부서에서는 실험실, 작업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지침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표준작업 안전수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41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점검

가.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의한 일상점검을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한다.

나. 일상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2. 정기점검

가. 안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나.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다.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의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밀안전진단

가. 연구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의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우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직원은 연구원 내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담당자의 현장 확인과 안전보건 주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기취급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전문대나 국외관측소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연구원 내에서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담당자의 현장 확인과 안전보건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리감독자에게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수행 시 감시인 또는 입회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작업허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3조(교통재해 예방) ① 연구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 20km 이내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연구원 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차량 일상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임직원의 교통재해 예방을 위한 출장업무 시 사고예방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출장업무 시 교통재해 예방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44조(비상조치계획) ① 연구원은 중대산업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

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또는 절차서)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2.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 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 발생 시 또는 비상 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 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하여야 할 임무와 절차

제45조(피난 및 대응훈련 등) ① 연구원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③ 비상조치 시나리오,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에서 정한다.

제4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연구원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연구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비상연락체계 연락망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7조(작업환경측정) ①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관계부처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실시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48조(건강진단) ①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

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건강진단 시기,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서 정한다.

제49조(건강관리실 등 설치) ① 원장은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와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관리실은 직원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직원이 알기 쉽게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④ 직원은 연구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유해물질 기준, 수칙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51조(보호구) ① 연구원은 작업에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52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원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직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3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① 연구원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제공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연구원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연구원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구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

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지침서에서 정한다.

제54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원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으로는 직원과의 면담,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방식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의 작업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원장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근골격계질환 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지침서에 정한다.

제55조(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원장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폭언·폭행 상황 발생시 업무 일시중단,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응대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 업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56조(건강유지 및 증진) ① 연구원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직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책 등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원장은 감염병과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 등 연구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57조(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①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는 밀폐공간의 위치, 안전작업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8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연구원은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지체 없이 119 및 경비실에 연락하고, 최초 상황을 전파받은 관리감독자 또는 경비대원은 관계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직원등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직원등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⑧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⑨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무부처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⑫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서 정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59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 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원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60조(연구실 사용제한) ① 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또는 사고 조사의 결과에 따른 직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유해인자의 제거
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4. 연구실의 사용금지
5. 연구실의 철거
6. 그 밖에 원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 직원은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상급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1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재해발생 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62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① 원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 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자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연구원은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원장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험성평가 계획,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64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5조(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개선실행 결과
 - 6. 그 밖에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연구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연구원 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3.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6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연구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 2.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
-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

설 이용의 협조

-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제1호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고,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 1. 도급인
 - 2. 관계수급인
 -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지침서에 정한다.

제9장 보칙

- 제6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원장은 전 직원과 (관계)수급인 등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직원과 (관계)수급인 등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유도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 제안제도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정한다.
- 제69조(포상 등)**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요령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직원
 -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 4.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관계)수급인 등

②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0조(징계)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직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직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직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직원

제71조(문서보존연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산업재해 발생기록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문서보존은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⑤ 문서 작성 및 보존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정한다.

제72조(준수) ①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이 원대 도급업체의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4. 7. 25.>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임직원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임직원 외의 임직원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에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임직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종사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종사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정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제 2호의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과 같은 내용 ○ 특별 작업별 관계법령에 명시한 교육내용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점검종류	점검 주기	점 검 자	비 고	
일상점검	실험전 매일 1회	연구활동종사자	저위험연구실 주1회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기점검	년 1회 이상	전문기관위탁점검 또는 안전환경관리자	저위험, 우수연구실 면제	
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위탁점검 또는 안전관련 자격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지 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과건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과건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 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 정 료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 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사망		

III.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직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 원인						

IV. ⑳재발방 지 계획					
---------------------	--	--	--	--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 성 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인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지역·공정	<input type="checkbox"/>	작업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